유럽연합(EU)의 수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

김 봉 태 연구원 / 수산ㆍ어촌연구본부

-- <차 례>=

- 1. 머리말
- II. EU의 수산물 생산과 소비
- III. EU의 수산물 교역
- IV. 시사점

1. 머리말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순수입 국이다. 2004년 EU의 수산물 수입액은 120억 유로(Euro)였으나 수출액은 20억 유로에 불과하여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유로에 이른다. EU 수역의 어업자원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획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EU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제3국에서의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수입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은 생선묵 등 어류 가공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EU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에 산재해 있던 여러 식품 관리 규정(Regulation)을 통합한 새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수산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1)

이 글에서는 이러한 EU 수산 부문의 최근 동 향과 변화를 수산물 생산과 소비, 어업 정책, 교 역, 수입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EU의 수산물 생산과 소비

1. 수산물 생산

1) 잡는어업

¹⁾ EU의 규정(Regulation)은 곧바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지침(Directive)은 18개월 내에 회원국 정부에 의해 법률로 채택되어 적용된다.

⟨표-1⟩ EU의 어획량 추이

단위 : 천 톤

771		잡는어업				양식어업			
국가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벨기에	36	30	27	26	1	2	1	*	
덴마크	1,999	1,534	1,031	1,090	45	44	32	42	
독일	239	205	261	262	64	66	74	*	
그리스	152	99	92	75	33	95	101	97	
스페인	1,179	995	898	*	224	312	313	363	
핀란드	155	156	122	136	17	15	13	13	
프랑스	675	690	709	667	281	267	246	244	
아일랜드	390	283	266	307	27	51	63	58	
이탈리아	397	300	283	279	215	217	192	*	
네덜란드	438	496	526	520	84	75	67	*	
오스트리아	0	1	0	0	3	3	2	*	
포르투갈	264	188	214	207	5	8	8	*	
스웨덴	405	339	287	270	8	5	6	6	
영국	910	746	640	654	94	152	182	170	
EU-15 전체	7,237	6,062	5,369	*	1,100	1,312	1,301	*	
체코	4	5	5	5	19	19	20	19	
에스토니아	132	113	79	86	0	0	0	0	
사이프러스	9	67	2	2	0	2	2	4	
라트비아	149	136	115	125	1	0	1	1	
리투아니아	57	79	157	156	2	2	2	3	
헝가리	7	7	7	*	9	13	12	13	
몰타	5	1	1	1	1	2	1	1	
폴란드	429	218	180	172	25	36	35	*	
슬로베니아	2	2	1	1	1	1	1	2	
슬로바키아	2	1	2	3	2	1	1	1	
EU-25 전체	8,034	6,150	5,918	*	1,159	1,388	1,375	*	

주: '*'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통계임. '0'은 0.5톤 미만을 뜻함. 자료: EuroStat.

〈丑-2〉 EU의 수역별 어획량

단위 : 천 톤

수역	2002년 (EU-15)	2003년 (EU-15)	2003년 (EU-25)
북서대서양	58	63	96
북동대서양	4,274	3,869	4,173
동중부대서양	409	427	575
지중해/흑해	505	499	502
남서대서양	59	36	37
남동대서양	9	13	22
서인도양	279	315	315
내수면	86	86	125
전체	5,739	5,369	5,918

자료: EuroStat.

⟨⊞-3⟩

EU-25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

단위 : 천 톤

	어종	2002년	2003년
서대	Common sole	33	36
유럽 가자미	European plaice	90	83
대구	Cod	163	141
노르웨이 베도라치	Norway pout	78	23
해덕	Haddock	76	63
블루화이팅	Blue whiting	215	338
화이팅	Whiting	41	35
유럽 메를루사	European hake	57	58
수염대구	Ling	20	19
세이쓰(대구류)	Saithe	68	56
까나리	Sandeel	723	307
대서양 적어	Atlantic redfish	58	62
아귀	Angler	20	19
대서양 전갱이	Atlantic horse mackerel	13	176
대서양 청어	Atlantic herring	652	673
대서양 정어리	European pilchard	264	245
유럽 멸치	European anchovy	124	93
유럽 스프랫	European sprat	514	536
가다랑어	Skipjack tuna	216	222
황다랑어	Yellowfin tuna	161	211
날개다랑어	Albacore	26	28
새치	Swordfish	28	32
대서양 고등어	Atlantic mackerel	443	396
노르웨이 바다가재	Norway lobster	55	54
식용 게	Edible crab	37	40
새우	Common shrimps	32	36
홍합	Blue mussel	127	95
지중해 홍합	Mediterranean mussel	46	43
기타		1,844	1,897
전체		6,347	5,918

자료 : EuroStat.

1995~2003년 사이 EU 25개국²⁾의 어획량(잡는어업 생산량)은 26% 감소했다(<표-1> 참조). 이는 EU 어획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덴마크가 이 기간에 4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³⁾ 2002년과 비교할 때 2003년 어획량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포르투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감소하여 전체적

^{2) 2004}년 5월 EU 회원국 수는 기존의 15개국에서 25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 가 있을 때 'EU-15','EU-25'로 표기한다. 그리 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EU'로만 표기한 것은 EU-25를 뜻한다.

³⁾ 스페인과 헝가리의 2004년 어획량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서 2003년 어획량이 EU-25의 가장최근 어획량 통계이다.

으로 0.6% 가량 줄어든 590만 톤이었다.⁴⁾ 이는 EU 수역에서 호전되고 있지 않는 열악한 자원 량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EU의 주요 조업국인 덴마크와 스페인이 전체 어획량의 36%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2005년에 새로 EU로 편입된 10개국의 어획량 비중은 9%에 불과하였다.

수역별로는 북동대서양 어장에서 2003년 어 획량의 71%에 해당하는 420만 톤을 어획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표-2> 참조). 주로 어획되 는 어종은 청어(Atlantic herring), 블루화이팅 (blue whiting), 고등어, 스프랫(sprat, 청어류) 등 이다(<표-3> 참조). 2003년에 어획량이 급감한 까나리(sandeel), 멸치의 조업은 자원 고갈이 심 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년에 금지되었 다.

2) 양식어업

2003년 EU-25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약 140만 톤으로 전체 어업생산량의 19% 가량을 차지하였다(<표-1> 참조). 2000년과 비교할 때 양식어업 생산량은 거의 정체된 상태이나 잡는어업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어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높아졌다. 2003년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영국이 EU-15 전체에서 72%를, EU-25 전체에서 68%를생산하여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해면에서 어류와 패류, 내수면에서 어류를 주로 양식하고 있으며 홍합, 무지개송어, 연어, 굴 등이 주요 품목이다. 한편 새로가입한 10개국은 내수면에서 잉어 양식을 많이

하고 있다.

2. 어업 정책

1) 공동어업정책 간소화 행동계획

2005년 10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의 법규를 간소화하는 3년 기한의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수산 부문에서는, 부문별 계획으로는 처음으로 '공동어업정책 간소화 행동계획(Action Plan for simplifying the Common Fisheries Policy)'이 채택되어 현재(2006~2008년)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보존(conservation)'과 '감독(control)'에 초점을 맞추고, 어업 관련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실행과정에서 적용과 감시가 편리한 조치들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 법률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함
- · 어업인과 어업관리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
- ·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과 어업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임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법률과 조치가 이들

^{4) 2004}년 EU-25의 어획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스페인의 어획량이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2000년과 리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규제 들도 여기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고, 우선적인 적 용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 쿼터 · 어획 노력 관련 조치, 치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자료의 수집·관리, 감시 조치, 보고 의무, EU 수역 바깥에서의 어업허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 한 이 행동계획은 공동어업정책 개혁의 일환으 로 EU 집행위원회가 최근에 채택한 조치들로 다년(多年) 관점의 보존 전략, 수역별 또는 어업 별 보존 조치, 어업과 환경 사이 상호작용을 충 분히 고려한 연구와 자료수집,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채용한 감시ㆍ감독ㆍ보고 등을 담 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행동계획이 '보 존'과 '감독'의 차원에서 어업인과 어업관 리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어업정 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06년 TAC

EU의 TAC와 그 할당량은 매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案)을 EU 수산각료이사회(Fisheries Council)가 심의・의결하여 결정된다. 이 때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 산하의 어업 관련과학・기술・경제 위원회와 유럽의 독립적인과학기구인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의과학적 자문을 반영한다. 그러나 EU 수산각료이사회에서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타협이 이루어지므로 과학적 자문의 내용과달리 TAC와 할당량이 급격하게 변동하지는 않

는다. 이에 따라 EU 수산각료이사회가 결정한 2006년 TAC와 할당량은 멸치, 아귀, 노르웨이 바다가재, 가자미 등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자원이 심하게 고갈되고 있는 발틱 해(Baltic Sea)와 나머지 해역을 구분하여 TAC를 설정하고 할당하였다. EU 수산각료이사회가 2006년 TAC와 관련하여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심해 어종(Deep-sea species): EU 집행위원 회가 제시한 TAC 20% 감축안을 완화하여 10% 감축하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서 해 수역에서 자망 조업을 금지함
- · 블루화이팅: 최근에 체결된 EU-노르웨이 어업협정에 따라 결정된 EU의 TAC 40만 2,558톤을 8개 회원국에 할당함
- · 비스케 만(Bay of Biscay, 프랑스 서해 소재)의 멸치: EU 집행위원회의 전면 조업 금지안을 완화하여 조건부 TAC로 5천 톤을 설정함
- · 영국해협 서부 수역의 서대 : EU 집행위원 회의 안(案)대로 어획노력량을 10% 감축 함
- · 발틱 해 바깥의 대구: EU 집행위원회의 안(案)대로 TAC와 어획노력량을 15% 감 축함
- 발틱 해의 대구: 발틱 해 동부 수역의 TAC는 2005년 3만 8,882톤에서 4만 5,339 톤으로 늘리면서 조업금지일수를 138일에 서 119일로 줄이고, 서부 수역의 TAC는 2005년 2만 4,700톤에서 2만 8,400톤으로

높이면서 조업금지일수를 91일로 확대함

그런데 이러한 2006년의 TAC 결정 내용은 과 학적인 자원 평가에 근거한 ICES의 견해와 격차 를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발틱 해 대구의 TAC가 늘어난 데 대해 유럽의 일부 언론들은 혼란스러운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곧 제시할 예정인 발틱 해 대구의 장기적인 자원회복계획에 기초한 TAC 설정이라고 밝혔지만, 세계야생생물기금 (World Wildlife Fund, WWF)은 대구 조업을 전 면 금지하라는 ICES의 권고를 거듭 무시하고 EU가 대구 자원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 WWF는 대구뿐만 아니라 EU 수역에서 80% 이상의 상업적 어종이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량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EU가 ICES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3) 자원 보존을 위한 다년 계획

EU는 자원 보존을 위해 '다년 계획(multi-annual plan)'을 운용하고 있다. 다년 계획은 심각한 고갈 상황에 있는 자원을 회복시키는 '회복 계획(recovery plan)'과 자원량을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계획(management plan)'으로 나뉜다. 다년 계획은 예방적 접근법에 기초한 어업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각 계획에 연간 TAC와 그 할당량을 산정하는 공식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EU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년 계획은 다

음과 같다.

- · 칸타브리아 해(Cantabrian Sea, 스페인 인근소재), 이베리아 반도 서해 수역의 은민대구(southern hake)와 노르웨이 바다가재의회복 계획(각료이사회 규정 Regulation 2166/2005)
- · 민대구(northern hake)의 회복 계획(각료이 사회 규정 Regulation 811/2204)
- 북해(North Sea), 카테갓(Kattegat), 스카게 락(Skagerrak), 영국해협 동부 수역, 스코틀 랜드 서해 수역, 아일랜드 해의 대구 회복 계획(각료이사회 규정 Regulation 423/ 2004)

이 밖에 현재 북해의 가자미와 서대, 영국해협 서부 수역과 비스케 만의 서대, 유럽 뱀장어 (European eel)에 대한 장기 계획안이 채택되어 있다.

4) 양식어업 개발 장려

자원 상태 악화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EU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 또한 잡는어 업이 위축되면서 어촌 지역에는 새로운 고용 창출 산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EU는 양식어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어촌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해 개정된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업재정지원제도(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를 들 수 있다. FIFG의 양식어업 개발 지원은 회원국들의 체계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근거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양식 개발계획은 세 가지 핵심 지원 기준인 '품질 및 식품안전','고용창출','환경보호'를 충 족해야 한다.

최근 들어 EU에서 연어, 농어, 감성돔 등과 같은 일부 품목 위주로 양식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EU는 양식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새 품목・품종의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U에서 새 양식 품목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넙치, 참다랑어, 서대, 터봇, 베도라치(wolffish), 오징어, 문어 등 다양하다.

이 밖에 EU는 유기양식의 생산, 식품표시, 관리 등을 위해 EU 차원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8월에는 EU집행위원회가 양식 어패류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EU는 양식어업의 질병 발생으로 생산액의 20%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20년 전에 제정된후 개정되지 않은 탓에 다양하게 개발된 양식방식과 품목, EU회원국의 확대 등을 감안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규칙안은 질병 예방과질병의 근절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규칙안이 채택되면 기존의 EU 지침 Directive 91/67/EEC, 93/53/EEC, 95/70/EC를 하나의 지침으로 대체하게 된다.

5) 가격지지를 위한 시장개입

EU는 각료이사회 규정 Regulation 2033/2005

에 따라 2006년 어기(漁期)의 특정 수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Guide price)과 공동체 생산자 가격(Community Producer Price)을 설정하고 있다. 기준 가격은 매년 대표적인 양륙항의 이전 3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각료이사회가 산정한다. 이 기준 가격에 근거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인수 가격(Withdrawal Price)을 정하는데, 특정 어패류의 가격이 이 가격 수준보다 하락하면 시장개입 정책을 발동할 수 있다. 시장개입 수단으로는 시장의 수산물 인수를 위한 재정 원조(집행위원회규정 Regulation 2181/2005),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냉동저장 지원(집행위원회 규정 Regulation 2180/2005)이 있다.

6) 외국과의 어업협력

EU의 외국과의 어업협력은 상대국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파로 제도(Faroe Island),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업기회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인도양 국가, 그린란드 등과는 어업기회를 확보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현재 EU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앞에서 언급한나라 외에 앙골라, 베르데 곶(Cape Verde), 코모로(Comoros),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 가봉, 감비아(Gambia), 기니(Guinea), 기니비사우(Guinea-Bissau), 키리바시,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셔스(Mauritius), 모리타니아(Mauritania), 모잠비크, 상토메(Sao Tome), 세네갈, 세이셸, 솔로몬 제도가 있다.

이들 나라와의 협정 가운데 최근 노르웨이와 모로코와의 협정이 갱신되었다. 2005년 갱신된 EU-노르웨이 어업협정은 양측의 상호 관계를 규정한 4개의 소협정으로 구성되는데, 핵심 내 용은 어획노력량 감축, 감독 수단 개선, 공유 자 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이번의 협정 갱신에서 노르웨이 항구에서 EU 어선에 의한 청어 양륙 금지 조치와 EU 수산물의 노르 웨이 경유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2005년 7월에는 EU-모로코 어업협정이 4년 기한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지난 1999년 11월에 종료된 1995~1999 협정이 6년 만에 갱신된 것이다. 5 새 협정에 따라 EU 어선 119척이 모로코 수역에서 소형 원양 어종을 연간 6만 톤까지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EU는 이에 대한 대가로모로코에 4년 동안 1억 4,400만 유로에 이르는 재정적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중 3,600만 유로는 모로코의 소규모 어선과 지속가능한 어업을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3. 수산물 소비

EU의 수산물 공급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공식 자료는 2000년의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이다.⁶⁾ 수 산물 공급량을 소비량으로 볼 때 1인당 소비량 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나서 4~55kg의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장 많 은 반면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헝가리,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장 적다(<표-4> 참조).

EU 5개국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조사연구로 2005년 10

월 유럽의 연구기관인 씨푸드플러스(SEA-FOODplus)가 발표한 것이 있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의 5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은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한 주에 1.2회 수산물을 소비하고 집 바깥에서는 한달에 한 번꼴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소비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 국가별로 소비빈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스페인이 한 주에 2.5회 소비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덴마크로 스페인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네덜란드와벨기에가 한 주에 1회 정도 소비하여 가장 적었다.

국가별로 선호 형태와 어종도 다른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5> 참조). 벨기에와 덴마크는 주 로 신선 필렛 형태로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는데, 벨기에 소비자가 대구와 연어를 선호하는 반면 덴마크 소비자는 청어와 다랑어를 선호하였다. 폴란드는 통조림 가공품의 소비가 많으며 청어 와 고등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다. 스페 인 소비자는 가공하지 않은 신선 수산물 형태로 주로 소비하면서 다랑어와 메를루사를 좋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하고 는 나이가 많을수록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것으 로 집계되었다.

⁵⁾ 협정의 공백 기간 동안 모로코 수역의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많은 수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선들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6) 5}년마다 조사되고 있으므로 2005년 자료가 2006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EU의 국가별 연간 1인당 수산물 공급량(2000년)

단위 : kg/인

EU-15		신규	가입국
벨기에/룩셈부르크	21.1	체코	10.6
덴마크	23.3	에스토니아	17.1
독일	11.8	사이프러스	24.9
그리스	22.1	라트비아	13.2
스페인	43.3	리투아니아	36.7
프랑스	29.3	헝가리	4.2
아일랜드	13.9	몰타	30.2
이탈리아	22.6	폴란드	9.6
네덜란드	22.3	슬로베니아	6.5
오스트리아	10.1	슬로바키아	6.9
포르투갈	54.5		
핀란드	30.0		
스웨덴	25.3		
영국	19.7		
	EU-15 EU-25		23.7 21.5

자료 : Eurostat.

⟨丑-5⟩

EU 5개국의 선호 어종 비율(2005년)

단위:%

어종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대구	18.3	6.1	13.3	8.8	8.5
연어	16.2	10.8	15.0	4.7	9.3
다랑어	15.7	18.6	15.9	12.1	24.3
가자미	6.1	10.4	1.3	1.8	2.0
메를루사	2.0	1.1	2.7	10.0	23.1
고등어	6.1	16.5	9.7	18.9	6.0
정어리	6.6	21.0	12.8	20.4	2.2
명태	11.2	5.0	8.0	15.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SEAFOODplus.

III. EU의 수산물 교역

1. 수산물 교역 동향

EU는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수산물 무역수 지 적자폭도 아주 크다. 2004년 EU는 120억 유 로어치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20억 유로어치를 수출하여 100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 다.⁷⁾ 물량으로는 420만 톤을 수입하고 170만 톤

⁷⁾ 이 글에서 나타낸 수산물 교역 통계는 4단위 HS 코 드로 0301~0307 품목과 1604~1605 품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丑-6〉

EU-25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유로, 천 톤

구분	금액			물량		
十七	1995년	2000년	2004년	1995년	2000년	2004년
수출	1,286	1,851	2,154	984	1,373	1,726
수입	7,524	11,724	12,122	2,715	3,736	4,241
무역수지	-6,238	-9,873	-9,968	-1,731	-2,363	-2,515

자료 : Eurostat.

⟨표-7⟩

EU-25의 2004년 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천 유로, 톤

HS 코드	품목 설명	수	출	수	입		
LO 포드	급취 설팅	금액	물량	금액	물량		
0301	활어	40,171	1,828	95,516	5,313		
0302	신선·냉장 어류	305,473	68,271	1,697,275	659,765		
0303	냉동 어류	878,876	1,313,496	1,031,601	596,814		
0304	어류 필렛과 기타 어육	192,600	51,877	2,804,353	1,078,427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79,777	19,627	763,007	162,624		
0306	갑각류	215,870	88,171	2,209,506	438,875		
0307	연체동물	92,735	26,278	1,346,517	525,583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71,182	140,142	1,498,161	627,402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77,329	15,862	675,985	146,557		
	합계	2,154,013	1,725,552	12,121,921	4,241,360		

자료 : Eurostat.

을 수출하여 250만 톤이 순수입량이었다(<표 -6> 참조).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수입량이 7.7% 늘어났는데 이는 EU 수역에서의 어획량 감소분을 수입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자원량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기준으로 수입량의 84%가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이었고, 4단위 HS 코드로 0304에 해 당하는 '어류 필렛과 기타 어육'이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표-7> 참조). 수 입상대국별로는 EU 수산물 수입량의 20%를 차지한 노르웨이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태국, 러시아, 파로 제도, 인도의 순으로 이들 나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많았다.

EU 회원국별로는 갑각류 · 연체동물과 냉동 어류를 주로 수입하면서 전체 EU 수입량의 22% 를 차지한 스페인이 가장 많았고, 신선 · 냉장 어 류를 주로 수입한 덴마크가 13%, 가공 어류와 어류 필렛의 수입이 많은 영국이 12%, 어류 필

〈丑-8〉

EU-25의 대한국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 천 유로, 톤

구분		금액		물량		
十七	1995년	2000년	2004년	1995년	2000년	2004년
수출	14,343	29,237	39,236	498	1,146	2,888
수입	72,626	86,197	73,450	27,687	35,385	32,426
무역수지	-58,283	-56,960	-34,214	-27,189	-34,239	-29,538

자료 : Eurostat.

⟨丑-9⟩

EU-25의 2004년 대 한국 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 유로, 톤, %

ווי אר	프모 서대		수출		수입		
HS 코드	품목 설명	금액	물량	금액 비중	금액	물량	금액 비중
0301	활어	52	0	0.1	25	21	0.0
0302	신선・냉장 어류	381	212	0.1	1	0	0.0
0303	냉동 어류	15,152	23,734	1.7	12,494	6,307	1.2
0304	어류 필렛과 기타어육	695	430	0.4	1,021	381	0.0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47	1	0.1	101	9	0.0
0306	갑각류	3,323	987	1.5	3,216	671	0.1
0307	연체동물	6,932	1,219	7.5	33,173	14,334	2.5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583	100	0.2	18,008	9,948	1.2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12,071	2,195	15.6	5,411	758	0.8
	합계	39,236	28,879	1.8	73,450	32,428	0.6

주 : 금액 비중은 해당 품목의 EU 전체 수출 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0'은 0.5톤 미만을 뜻함.

자료 : Eurostat.

렛을 많이 수입한 독일이 10%, 갑각류 • 연체동 물을 주로 수입한 이탈리아가 9%로 뒤를 이었 다. 한편 EU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나이지리아, 러시아, 중국, 이집트, 일본, 아이보리코스트, 세 이셸, 태국, 미국, 모로코 등이다.

우리나라와의 수산물 교역은 EU 전체에서 볼때 비중이 작다. EU의 대한국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우리나라에 대해 2004년 현재 약 3,400만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표-8>

참조). 2004년을 기준으로 EU는 우리나라에 냉동 어류와 어류 이외의 가공품을 주로 수출하였고, 연체동물, 어류 가공품, 냉동 어류를 많이 수입하였다(<표-9> 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EU의 대 한국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줄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폭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부터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선묵등 과거 한국산의 비중이 높았던 어류 가공품의

수입이 다른 나라산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과 비교할 때 2004년 EU의 어류 가공품 수입액은 9% 늘어났으나 한국산 수입액은 70% 감소하여 한국산이 경쟁국 상품에 시장을 잃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동안 EU의 연체동물 수입시장은 31% 확대되었고 한국산의 수입도 33배 증가하여 어류 가공품을 제치고 한국산 수산물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떠올랐다.

2. 수산물 수입 정책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EU가 인정하는 수출국의 소관 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또한 수출국은 EU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생산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소관 당국을 운용해야 한다. 2004년 4월 EU는 새 식품 및 사료감독 규정과 이른바 '위생 패키지(Hygiene package)'라는 새 위생 규칙을 채택했다. 새 위생 규칙은 17개의 서로 다른 지침들에 산재해있는 복잡한 위생 요건을 통합하고 단순화한 것이다. '위생 패키지' 가운데 일반 위생 규칙은 모든 식품의 생산에 적용되고, 이와는 별도로 어패류, 육류 등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 규칙이 적용된다. 새 규정과 규칙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EU의 수입 수산물도 적용을받는다.⁸⁾

1) 수입 감독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승인된 국경 검역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된 EU 지침 Directive 97/78/EC는 제3국에서 수입된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의학적 검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검역의 단계는 세 가지로 위생 증명서를 확인하는 '서류 검사', 위생 증명서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치 검사', 제품 자체를 조사하는 '제품 검사'를 거친다. 만일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되거나 60일 이내에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EU의 새 규정 Regulation 882/2004는 EU 지침 Directive 97/78/EC을 보완하고 있다. 이 규정은 Directive 97/78/EC에서 다루지 않은 식품 및 사료의 감독 요건을 추가하여 소관 당국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⁹⁾

2) 위생 증명

양식 수산물을 포함하여 식용의 동물성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수입을 관리하는 위생 규칙은 EU 지침 Directive 2002/99/EC로 정해져 있다. 위생 증명의 일반적인 원칙도 이 지침에 포함된다. 위생 증명서는 제품을 수입하는 EU 회원국의 공식 언어와 해당 제품이 경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역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⁸⁾ 새 규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Key questions related to import requirements and the new rules on food hygiene and food controls」(http://europa.eu.int/comm/food/inter national /tradeinterpretation_imports.pdf)를 참조하면 된다.

⁹⁾ 수입요건과 관련해서는 EU 규정 Regulation 882/2004 의 Chapter II, Title VI를 참조하면 된다.

〈丑-10〉

EU의 식품 감독 및 위생 관련 규정과 지침

구분	규정・지침	내용	시행 시기
식품 감독	Regulation 882/2004	식품 및 사료, 동물 위생,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식품 및 사료의 감독 요건	2006년 1월
	Regulation 852/2004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포함한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위생 요건	2006년 1월
	Regulation 853/2004	이매패류와 수산 가공품에 대한 위생 규칙과 표지 요건	2006년 1월
위생 패키지	Regulation 854/2004	식용 동물성 제품의 감독 조직에 대한 규칙	2006년 1월
	Directive 2002/99/EC	동물성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수입을 관리하는 위생 규칙	2005년 1월
	Directive 2004/41/EC	기존의 17개 지침 폐지	2006년 1월
	Regulation 2073/2005	연체동물의 대장균, 수산물의 히스타민(histamine) 등 식품의 미생물 잔류 허용 기준	2006년 1월
시행 수단	Regulation 2074/2005	Regulation 853/2004, Regulation 854/2004, Regulation 882/2004를 적용하는 수단	2006년 1월

EU의 공식 언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증명서가 수출되기 전 해당 제품이 수출국소관 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는 동안 작성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EU로 통관되지 않는다.

'위생 패키지'는 EU 지침 Directive 2002/99/EC과 함께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러 규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생 패키지'와 새로운 수입 감독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수단을 명시한 규정도 같은 시기에 발효하였다(<표-10> 참조).

3) 오염 및 잔류물질 규제

개정된 EU 규정 Regulation 466/2001은 수산 물을 비롯한 식품의 오염원에 대해 최대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납, 카드뮴, 수 은과 같은 중금속도 포함된다. 양식 수산물을 포함하여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약품·화학물질의 잔류량에 대한 감시도 EU 지침 Directive 96/23/EC에 명시되어 있다. EU로 수출하려면 수출국은 잔류물질 감시 계획(residue-monitoring plan)을 제출해야 한다.

4) 이력추적제도

개정된 EU 규정 Regulation EC/178/2002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EU 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반에 걸쳐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가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모든 식품 사업자는 식품(또는 사료) 사업 활동에서 식품법의 요건을 갖출 의무와 관련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U 바깥의 제품과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부문에

대해 특별히 국가 간 합의가 있는 경우와 수의 (獸醫) 부문 등과 같이 EU의 특별한 법률 요건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상대국의 수출 업자가 EU 역내에 부과되어 있는 이력추적제도 에 관한 요건을 갖출 의무는 없다. 이는 EU의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의 제3국 출처를 증명하도 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EU의 수입업자는 제3국 의 수출업자에게 이력추적제도의 요건을 충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V. 시사점

최근 EU의 수산물 생산 동향을 요약하면, 잡는어업 생산량(어획량)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양식어업 생산량은 정체되면서 전체적인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내의 수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U의 이러한 상황은 어업관리와 수산물 교역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어업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공동어업관리를 실현하고 있다는점에서 EU는 우리나라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TAC 설정 등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후퇴 논란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U는 중립적이면서 권위 있는 유럽의 국제 과학기구인 ICES가 과학적 평가를 어업관리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다. 그 러나 많은 어종에 대해 강력한 조업규제를 권고 하고 있는 ICES의 견해가 어업의 사회ㆍ경제적 인 측면을 고려한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 점은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WWF는 EU가 2006년부터 공동어업정책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어업정책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원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단시일 안에 EU의 어업관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EU의 어획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EU 어업관리 정책의 성과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공과(功過)는 공 동 어업관리가 요청되고 있는 한국・중국・일 본에 앞선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동북아 수역도 EU처럼 국가 사이 공동 수역이 있고 경계를 넘 나드는 많은 어업자원을 공유한다. 더욱이 한 • 중・일 모두 소규모 어업이 많고 어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사정도 EU와 닮아 있어 EU의 어업정책은 원용할 부분이 많다. 특 히 EU 수역에 대해 오랜 기간 객관적인 연구자 료를 축적해온 ICES와 같은 기관이 동북아시아 에 설립된다면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된 세 나 라의 공동 어업관리 정책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U의 경험을 깊이 받아들여 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ICES의 연구 결과가 EU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조율 과정에서 희석되면 서 어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지 여부는 불투 명하다. 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이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볼 대목이다.

둘째, 수산물 교역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출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는 EU로의 수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EU의 어업생산이 감소해왔고 앞으로도 늘어 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는 대 EU 주요 수출품이 었던 어류 가공품의 수출이 경쟁국 제품에 밀리면서 EU로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EU가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니지만 식용수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과거 생선묵과 같이 수출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최근 EU에서 연체동물을 많이 수입하면서 이품목의 한국산 수출이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식품 수입 관련 규정에도 유의 해야 한다. EU는 위생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 문에 이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한층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식품 트레이스 어빌리티 매뉴얼」, 2005. 4.
- 2.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on certain key questions
 related to import requirements and the new

- rules on food hygiene and on official food controls. 2006. 1. 5.
- 3. European Communities, Fishery Statistics: Data 1990-2004, 2005.
- 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EU-25*Fishery Products Annual Report EU Policy
 & Statistics 2006. 2006. 1. 27.
- 5. http://epp.eurostat.cec.eu.int.
- 6. http://europa.eu.int/comm/food/index_en.htm.
- http://europa.eu.int/comm/food/animal/animalproducts/index_en.htm.
- 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 index.php.
- http://www.seafoodplus.org/European_fish_ consumpt.411.0.html.